

매니토바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 변경사항

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다음의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 변경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:

- 1) 신청인은 최소 순 자산 캐나다화 \$350,000 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2) “매니토바 주 답사방문 안내서(Guide to Making an Exploratory Visit to Manitoba)”에서 요구하는 순 자산 증빙서류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. 이러한 변경사항을 보시려면 “안내서(Guide)”를 이용하십시오.
- 3) 신청인은 영주권 신청서류와 함께 “사업 의향서 요약(Summary of Business Intent)”을 제출해야 합니다. 이것은 이전의 사업계획서를 대신합니다.
- 4) 순 자산이 캐나다화 \$500,000 이하인 신청인은 매니토바 주 도착 즉시 필요한 자금, 기타 소득, 생활 비용, 예상 이주비용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. 답사 방문에 참여하는 신청인들은 매니토바 주에 머무르는 동안 이러한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민관과 인터뷰를 할 때 논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.
- 5) 해당되는 경우, “대리인 이용(Use of Representative)” 양식 IMM 5476 을 답사 방문 정보 원본과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6) 초청장이 필요한 신청인:

매니토바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(MPNP-B)은 제출된 모든 문서자료에 대한 예비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 접수된 정보가 MPNP-B 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합니다. MPNP-B 로부터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는 프로그램 요건 및 접수된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.

MPNP-B 는 MPNP-B 가 정한 최소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청인들을 거절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부족한 문서자료로 인한 거절을 피하려면, 필요한 모든 문서자료를 “매니토바 주 답사방문 안내서”에 따라 제출하십시오.

한국인 신청인에 한하여: 사업자 등록증, 재무제표 3 년치, 세무관련 서류 3 년치, 자본 입증 보고서(있는 경우) 등의 한국 회사 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. 모든 재무관련 정보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고 모든 금액은 캐나다화로 환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.

- 7) 연방 정부 신청 과정: *지금 현시각부터*, 모든 PNP-B 신청인(또는 신청인의 대리인)은 승인받은 자신의 PNP-B 신청서류 원본 및 해당 수수비를 관할 지역 캐나다 비자 사무소로 직접 송부해야 합니다.